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경찰정책 수립·관리 기능과 사이버테러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담당관과 사이버테러대응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사이버테러대응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총경 2명)을 증원하며, 정원 2명(경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2명)하^고,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14명(경정 7명, 경감 132명, 경위 116명, 경사 156명, 경장 165명, 순경 288명, 6급 10명, 7급 30명, 8급 10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86명(경감 171명, 경위 55명, 경사 50명, 경장 1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0명(경위 5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50명)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4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요정책의 연계·통합 및 조정

제63조제2항 후단 중 “49명”을 “51명”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1,919”를 “1,92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09”를 “1,211”로 하며, 총경 이하 “1,190”을 “1,192”로 하고, 일반직 계 “710”을 “711”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4”를 “705”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2,086”을 “133,00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7,772”를 “128,636”으로 하며, 총경 이하 “127,676”을 “128,5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292”를 “4,342”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4,257”을 “4,307”로 한다.

별표 6 제1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수사본부 1개 과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6 제2호나목에 34)부터 3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사건심사 업무(시·도경찰청)	154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35)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6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36) 사이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72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경무부) ① (생 략)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8. (생 략) <u><신 설></u> 9. ~ 14. (생 략)	제46조(경무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주요정책의 연계 · 통합</u> <u> 및 조정</u> 9. ~ 14. (현행과 같음)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 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u>49명</u> 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 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 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 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51명</u> 을-----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6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919</u>		<u>1,922</u>	+3	
경찰	공무원	계					
		·		·	·		
		·		·	·		
총	경	이하					
			<u>1,190</u>		<u>1,192</u>	+2	
일반	직	계					
			<u>710</u>		<u>711</u>	+1	
		·		·	·		
		·		·	·		
4급	또는	총					
		경					
		이하					
			<u>704</u>		<u>705</u>	+1	
		·		·	·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2,086</u>	<u>133,000</u>	+914
경찰공무원 계	<u>127,772</u>	<u>128,636</u>	+864
•	•	•	
•	•	•	
총경 이하	<u>127,676</u>	<u>128,540</u>	+864
•	•	•	
•	•	•	
일반직 계	<u>4,292</u>	<u>4,342</u>	+50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257</u>	<u>4,307</u>	+50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2